

# 알아봅시다!

# 공정거래법

담합의 유형



시작하기





# 부당공동행위(담합)의 유형

**01** 가격을 결정·유지·변경하는 행위

**02**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

**03**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

**세 가지 유형**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을까요?



「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」

## 가격을 결정·유지·변경하는 행위

- ✓ 공동으로 가격 유지·가격 인상·인하율을 결정 하는 행위
- ✓ 목표 및 기준 가격, 최저 가격 등 가격 설정 기준을 정하는 행위

예 시 ☆

〈A사 용역 재계약 전 경쟁사와 가격인상 합의〉

발주자 A사의 운송·하역 용역을 수행하는 2개 회사는 사전 모임을 통해 A 회사와의 재계약 전 **요율 인상을 합의**했고, A 회사에 가격인상 요청 공문 발송 후 해당 공문을 상호 교환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함.



「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」

##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제한 행위

- ✓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운송·거래를 제한하는 행위
- ✓ 상품의 거래량, 수송량 등을 사업자 별 일정 비율로 할당하는 행위

예 시 ★

〈A사 용역 입찰 전 경쟁사와 운송구간 배분 합의〉

발주자 A사의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회사는 사전 모임을 통해 각 회사 별 **운송구간을 배분**하여 입찰하기로 **합의**했고, 투찰가격의 비율도 합의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함.



「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」

##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

- ✓ 사업자 별 거래상대방 지정 또는 입찰 자격·순위 등의 합의 행위
- ✓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

예 시 ★

〈A, B사 용역 입찰 전 낙찰자 및 투찰가 공동 합의〉

통합 발주자 A, B사의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한 3개 회사는 사전 모임을 통해 **발주처별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**하여 입찰하기로 합의하고,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함.



## 유의사항

- 01** 경쟁사와의 모임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언급 될 경우, 그에 대한 **반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.**
- 02** 경쟁사 직원과 거래조건, 운영 계획 등 핵심 사항에 대한 **정보교환은 어떤 수단으로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.**
- 03** **문서를 통해 모임 또는 협의의 내용을 기록할 경우** 담합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방(주) 컴플라이언스팀에 문의해 주세요

